

파주신도시 휴먼시아(A18-1블럭)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공급내역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일원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내 A18-1블럭
- 공급규모 : 10년 공공임대주택 9개동 7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분양전환가격 안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되오니 청약신청자께서는 이 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청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불법 임차권양도전대 금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19조 및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조치합니다.

■ 인터넷 청약 안내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어 착오 또는 고의에 의한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통장 재사용 불가, 계약체결 불가,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자격 제한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신청 형태	세대별주택면적(m ²)					공급호수								해당동	해당동 형별 최고 층수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계	신혼부부특별		3자녀 특별	기타 특별	노부모 우선	일반	해당동		
	전용	주거공용	계				파주시	수도권							
74A	74.25	23.6124	97.8624	4.1889 (33.1704)	135.2217	214	19	45	6	2	21	121	801 804 805 806	20 15 12 9	
84A	84.15	26.7607	110.9107	4.7475 (37.5932)	153.2514	158	14	34	5	22	16	67	802 803	20 20	
84B	84.89	26.9960	111.8860	4.7892 (37.9237)	154.5989	164	15	34	5	1	17	92	807 808 809	25 30 27	
84C	84.48	26.8656	111.3456	4.7661 (37.7406)	153.8523	164	15	34	5	45	16	49	807 808 809	25 30 27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각 신청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됨.
- 특별공급 신청 미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파주시 : 수도권 = 30 : 70의 비율로 배분하되 파주시의 30% 물량을 먼저 계산하고, 그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예)

미달물량	1	2	3	4	5	6	7	8	9	10
파주시	-	-	-	1	1	1	2	2	2	3
수도권	1	2	3	3	4	5	5	6	7	7

- 주택의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만 표기하였으며, 신청형별란, 구분란 등에 표시된 74A, 84A, 84B, 84C 등은 전용면적 형별 구분을 위해 표시한 것으로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벽식·평지붕 및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이 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 세대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임.(이른바 지하주차장 주동통합형)
- 이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됨.

■ 임대조건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입주예정
		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74A	1층	60,000	12,000	48,000	360	2011. 8월 예정
	중간층	64,000	12,800	51,200		
	최상층(다락)	70,000	14,000	56,000		
84A, 84B, 84C	1층	65,000	13,000	52,000	395	
	중간층	69,000	13,800	55,200		
	최상층(다락)	75,000	15,000	60,000		

- 임대기간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향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임대차 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결정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되거시 되돌려드립니다)

4.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5.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임

파주운정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며,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신청형별	계	택지비	건축비
74A	214,605	91,644	122,961
84A	243,751	103,863	139,888
84B	243,774	104,776	138,998
84C	243,717	104,270	139,447

6.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선정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가. 신청자격

아래에서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8.9.17) 현재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8. 9. 17) 현재

- ①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 ②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5년 이내이며
- ③ 그 기간에 출산(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 ④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부한 자이면서 ('09.1.1부터는 12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인자.

단,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소득이 있는 경우(6개월이상 근로에 종사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함)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인이상 세대는 4인이상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인자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를 넘지 않아야 함)

※ '0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08년 통계청)

- ▷ 70% : 월평균소득 2,572,802원(단, 4인이상 세대는 2,818,449원)
- ▷ 100% : 월평균소득 3,675,431원(단, 4인이상 세대는 4,026,356원)

※ 자격요건 중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3자녀 특별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8. 9. 17)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미만('88. 9. 18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 기타 특별공급

지구내 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직업군인으로서 해당 기관(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지자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청, 국방부 등)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8. 9. 17) 현재 무주택세대주.

■ 일반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8. 9. 17) 현재 파주시 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8. 9. 17)로부터 기산하여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계속하여 3년이상 부양(주민등록등본 기준)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시 배우자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주택(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에도 청약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신혼부부 및 3자녀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함.

• 기타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주택에 청약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불가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일반공급의 경우

1세대 1건만 청약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또는 부부 각각 청약 등 중복청약 및 당첨시 모두 계약 불가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나. 입주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건설량의 30%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 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3자녀 특별공급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3%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신청형태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21세대)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아래표 참조).단, 시도별 대상세대수의 건설호수가 과소한 신청형태로 인하여 특정지역에 배정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전체 건설호수를 감안하여 일부 조정하였음.

※ 지역별 배정호수 : 경기도 10, 서울시 9, 인천시 2

신청형태	계	74A	84A	84B	84C
경기도 거주자	10	3	2	3	2
서울시 거주자	9	2	2	2	3
인천시 거주자	2	1	-	1	-
계	21	6	4	6	5

■ 기타 특별공급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건설량의 10%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하되,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함.

■ 일반공급

- 동일순위 경쟁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8. 9. 17)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07. 9. 17부터) 당해주택 건설 지역(파주시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30% 우선 공급하며('07.9.18 이후 파주시 전입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분류됨), 이 방식은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는 해당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10%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하며,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다. 입주자 선정순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1)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거주자(신청형별 호수의 30%범위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8. 9. 17)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07. 9. 17부터) 당해주택 건설지역(파주시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에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함
2)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자	
3) 미성년인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 자녀수 산정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도 포함하여 산정	

■ 3자녀 특별공급(아래 배점표에 의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미성년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 간 (3)	20	세대주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세대주 나이가 만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시·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일반공급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단, 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8.9.17)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1~3순위 및 특별공급대상자격 외로 당첨된 주택 제외)에 당첨된 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에 한함) 전원]은 1순위 신청불가(2순위로 신청가능).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허위 또는 착오로 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청약센터(www.ap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확인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1순위자중 과거 5년 이내 당첨자(1순위 단서조항 참조)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08.9.17) 현재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함.(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

동일지역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 2순위자에 한함)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7. 공급일정 및 장소

■ 신혼부부, 3자녀 및 기타 특별공급 신청접수

구 분	순위 및 점수구분	신청일자	신청장소 및 시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08. 9. 25(목)	파주신도시사업본부 휴먼시아 주택전시관 (10:00~17:00) ※ 인터넷 청약 불가
	2순위	'08. 9. 26(금)	
3자녀 특별공급	75점 이상	'08. 9. 25(목)	
	75점 미만	'08. 9. 26(금)	
기타 특별공급	-	'08. 9. 25(목)	

■ 일반공급 신청접수

신청자격		공급대상	신청일자	신청장소 및 시간
신청순위	거주지역			
1순위	파주시, 수도권	노부모부양 우선	'08. 9. 26(금)	-인터넷신청(10:00~18:00) ※ '인터넷청약안내' 참조
	파주시, 수도권	일반	'08. 9. 29(월)	
2순위	파주시, 수도권	일반	'08. 9. 30(화)	- 단 노약자등 인터넷사용 불가 자에 한하여 방문접수 가능 (10:00~17:00)
3순위	파주시, 수도권	일반	'08. 10. 1(수)	

■ 신청접수관련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신청형별에 따라 신청접수 후 당첨자를 선정함.
-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혼잡방지 및 청약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병행함. 단, 특별공급대상자는 방문접수만 가능.
- 신혼부부 및 3자녀 특별공급은 순위별, 점수별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신청접수하며 신청자가 각 신청 유형별 배정세대수에 달한 경우 익일 접수치 않음.
단, 신청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신청형별에 대하여는 상위점수 해당자가 하위점수 해당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첨자 결정시 신청접수일에 따른 차별은 없음.
- 일반공급은 순위별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신청접수하며 각 신청형별로 당해 접수일까지의 접수자가 배정호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익일 접수치 않으며, 선순위자는 미달시에도 후순위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예시 : 3순위 접수일에 1,2순위 자격으로 접수 불가. 3순위 자격으로는 접수가능)
단, 3순위 접수종료시 모집세대수에 달한 모집단위는 1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무순위 접수하지 않음.
- 신청형별 접수마감 여부는 당일 오후 8시 이후에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단,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세대주기간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납입인정횟수 및 납입인정금액은 국민주택공급 신청서(가입 은행에서 발급)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함.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축세대 구분없이 컴퓨터로 일괄 추첨함.
- 3순위 신청자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또는 1,2순위 신청자 중 같은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파주시 노부모부양우선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수도권 노부모부양우선공급, 파주시 일반공급, 수도권 일반공급순으로 포함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파주시 일반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수도권 일반공급에, 수도권 노부모부양우선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수도권 일반공급에 포함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파주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수도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포함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형별로 공급호수의 2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 예비입주자로 통보를 받은 후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최초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도 당첨자로 봄.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신청형별에 따라 입주시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예비입주자는 노부모·지역우선공급·일반공급에 관계없이 당해 신청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정함.
-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부적격처리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 발표 및 장소

- 발표일시 : '08. 10. 16 (목) 15:00 이후
- 발표장소 : 주공 홈페이지 및 파주신도시사업본부 주택전시관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치 않으므로 신청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조회방법(당첨자 발표일 '08. 10. 16 (목) 15:00 이후 확인가능)
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www.jugong.co.kr) → 주택공급 → 인터넷청약 → 아파트 →당첨자조회
→ 신청지구의 개별조회/당첨자명단/예비자명단 확인

■ 계약일시 및 장소

- 계약일시 : '08. 10. 28 (화) ~ 10. 30 (목) (3일간) 10:00~16:00
- 계약장소 : 파주신도시사업본부 휴먼시아 주택전시관

인터넷 청약 안내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노약자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방문접수 가능. 신혼부부·3자녀·기타특별공급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청약 불가)

■ 인터넷 신청방법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해당 청약순위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신청순서 :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신청 지구 조회 및 선택 → 평형별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신청 대상선택 → 일자별 유의사항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있음.

■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며, 계약 체결시에 제출서류와 대조하여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세대원, 거주지, 무주택기간, 주민등록번호, 노부모부양 여부 및 조건등] 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신문광고나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주자모집공고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8.9.17)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이상 파주시 주택 건설지역에 계속 거주(주민등록표기준)한 경우에는 당해지역 대상자이며, 그 외 수도권 및 파주시 1년미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람.
- 납입인정 금액 및 납입인정 횟수는 해당가입은행에서 국민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 또는 은행 홈페이지(국민은행 가입자에 한함)에서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 ※ 당첨자 선정시 청약저축 불입금액 및 횟수는 통장에 인자된 금액 및 횟수 기준이 아닌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금액 및 횟수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람.
- 납입인정 금액 및 납입인정 횟수 조회 방법
 - ①저축가입은행 방문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②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에서 인터넷청약 선택 → 청약통장 순위조회 → 조회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 조회기준일 입력(입주자모집공고일) → 조회선택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단, 국민은행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만 해당)

■ 신청시간

- 인터넷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함.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 신청시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하실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인터넷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으로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신청형별인 경우에는 공사홈페이지에 공시 후 추가접수를 받음.

■ 계약시 서류제출

인터넷신청에 의해 당첨된 자는 “인터넷 신청접수자의 계약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계약체결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8.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8. 9. 17) 이후 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포함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특별공급신청서, 특별공급서약서 및 임대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입양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07. 12. 31 이전에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 저축에 가입한 자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1통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제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 소득입증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징구)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직장의료보험가입자	일반근로자	* 20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20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보육교사 등)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2007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2007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

■ 3자녀 특별공급

- 특별공급신청서, 특별공급서약서 및 임대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모두 기재된 것)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07. 12. 3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07. 12. 31 이전에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서 작성·제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도장(본인신청서 서명 가능)

■ 기타 특별공급

- 임대신청서 및 특별공급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07. 12. 3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60세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07. 12. 31 이전에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서 작성·제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도장(본인신청서 서명 가능)

■ 일반공급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 청약저축 1, 2순위자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신청자에 한함.
 - ※ 청약저축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
 - ※ 대리발급신청서 구비서류: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신청자로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모두 기재된 것)
 - 무주택세대주기간이 3년, 5년이상인 자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신청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에 한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마감재 내역은 형별,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람.
- 사이버건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사이버건본주택 및 분양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본 지구내·외의 기반시설이 입주시기에 맞추어 건설중에 있으나 일부 시설(제2자유로,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입주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음
- 본 지구내 편익시설 등이 입주시기에 맞추어 건설 추진중이나 공공청사 등은 사업추진여건 및 관계기관의 재정상 여건에 따라 입주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음
- 본 지구의 학교등 각종 교육시설은 택지개발지구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변경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지구내 도시기반시설(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폐기물집하시설, 납골시설, 변전소, 철탑 등)의 위치 및 용량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구내 납골당, 폐기물처리시설, 자동집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지구외 본 블록 남쪽으로 김포·관산간도로와 인접하여 폐차장 및 다수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음
- 단위세대 평면내용 중 추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일부 벽체의 위치 및 시설물의 설치내용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급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내에서 각 공급블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 때문에 준공 임박하여 모델선정 및 설치를 하는 것이 최선의 제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현재 설치계획 사양과는 다를 수도 있음.
- 지역난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SC한보건설(주) 및 동문건설(주)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파주신도시사업본부 개발사업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령」에 의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요약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 조항을 참조)
 - 1)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6)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공공기관건설주택의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7)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1.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안내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의 가족 중 만 65세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임대계약시 신청자에 한해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욕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출입문 규격확대, 좌식샤워시설, 미끄럼 방지 타일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주방싱크대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바닥센서 등
 - 주동·통로유도시설 : 점자스티커
- 건설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항목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대상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함
- 신청시기 : 계약시(최초 계약시에만 해당하며, 예비입주자 계약 또는 추가입주자 선정 후 계약시에는 신청불가)
-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통,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

12. 주거복지사업안내

도심지내 저소득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소년소녀·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포함)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사 고객센터실 1588-9082 로 문의바람

-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 전세임대 사업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3. 파주신도시사업본부 휴먼시아 주택전시관 위치 안내 (방문신청 및 계약장소 약도)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331-9
- 대중교통 : 3호선 대화역 5번출구 8번, 900번, 2000번 버스 이용(와동3리 또는 유피파크 하차)



문의전화

-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 휴먼시아 주택전시관 : 031) 948-1508
-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본부 고객센터실 : 031) 956-1000~1
- 대한주택공사 전국대표전화 : 1588 - 9082

※ 전화안내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본부